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2. 3
- 나. 제 안 자 : 부 천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1995. 2. 4
- 라. 상정일자 : 1995. 2. 8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과 동규칙운영에 따른 시행보완 지침 의거
- 한시정원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사항에 규정을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,
- 신도시지역 인구과대응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정원조례 부칙개정

-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경과규정

- 패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(정원 40명) → 95. 12. 31까지
 - 공영개발사업소(정원 31명) → 96. 12. 31까지

○ 행정동 분동 _____ 1개동

- 원미구 중1동 →
 - 원미구 중1동(기존) : 계남대로 남쪽지역
 - 원미구 중3동(신설) : 계남대로 북쪽지역 및 녹지지역
- 정원 : 18명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 음	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 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 음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50
의 결	95. 2. 10
년 월 일	(제35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2. 3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과 동규칙 운영에 따른 시행보완지침에 의거

○ 한시정원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사항에 규정을 정하도록 명시되고

○ 신도시지역 인구과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정원조례부칙개정

- 한시정원의 존속시한 경과규정

[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(정원 40명) → 95. 12. 31까지
 공영개발사업소(정원 31명) → 96. 12. 31까지

○ 행정동 분동 ————— 1개동

- 원미구 중1동 → [원미구 중1동(기존) : 계남대로 남쪽지역
원미구 중3동(신설) : 계남대로 북쪽지역 및 녹지지역
- 정 원 : 18명

□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호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동 : 612명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.
- ②(한시정원의 적용시한) 사업소정원중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정원 40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31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(생략)		제2조(정원의 총수) (현행과 같음)		
1 ~ 3(생략)		1 ~ 3(현행과 같음)		
4. 동 : 594명		4. 동 : 612명		